# 잘난 사람의 범죄는?: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그 심리기제

## 최승혁 허태균<sup>†</sup>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처벌판단에서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상호작용을 반복 검증하고, 나아가 범죄유형 및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판단자의 공정세상 인식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의 참가자 322명은 공정세상믿음 척도(Rubin & Peplau, 1975) 및 공정세상기대 척도(최승혁, 허태균, 2011)에 응답하였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또는 낮은 범죄자가 저지른 업무상 횡령 시나리오(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에게 전형적인 범죄) 또는 인질 강도 시나리오(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범죄자에게 전형적인 범죄)를 읽고 처벌형량을 결정하였다. 또한 도덕적 비난, 범죄의 원인 귀인, 피해의 심각성, 재범가능성 등 처벌판단 관련 변인들도 측정하였다. 첫째, 이미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공정세상기대에 상관없이 형량판단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현재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래의 세상이 공정해져야 한다는 당위적 기대가 강한 사람들이 그 기대가 약한 사람들보다 범죄자에게 더 가혹한 처벌판단을 하였다. 둘째,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적지위가 낮은 범죄자에게는 공정세상기대의 크기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 않았으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은 범죄자에게는 앞으로의 세상이 공정해져야 한다는 당위적 기대가 큰 사람들이 그 기대가 작은 사람들에 비해 더 긴 형량판단을 했다. 셋째, 사람들은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를 그 지위가 낮은 범죄자 보다 더 도덕적으로 비난했고, 더 성향귀인을 했으며, 더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형사처벌 판단에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범죄의 전형성 이외의 다른 심리적 기제들의 역할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인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의미와 형사처벌의 기능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범죄자의 사회경제적지위, 범죄의 전형성, 공정세상 믿음, 공정세상 기대, 처벌판단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이른 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들 또는 그 지위가 낮은 범죄자들에 대해 법률적 요인에만 의거하여 공정하게 처벌의 크기를 판단하는가?

아니면, 다르게 판단하는가? 다르게 판단한다면 그 이 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실제적으로 국내외 연구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법률적 요인 외 에, 법률외적 요인들, 즉, 판단자, 범죄자, 피해자, 그리 고 범죄유형 특성과 같은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sup>†</sup> 교신저자: 허태균,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02) 3290-2862, E-mail: tkhur@korea.ac.kr



또는 상호작용하여 피의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크기(형량, 가석방, 벌금, 보석금 등) 판단에 영향을 미침을 증거 해 왔다(예, 고재홍, 1995; 김범준, 최승혁, 2008; 박희찬, 김혜숙, 2010; 최 승혁, 김범준, 김시업, 2009; 최승혁, 허태균, 2011; 최 훈석, 박은영, 2008; Bodenhausen & Wyer, 1985; Espinoza & Willis-Esqueda, 2008; Gleason & Harris, 1976; Gordon, 1990; Gordon, Bindrim, McNicholas, & Walden, 1987; Gordon, Michels, & Nelson, 1996; Freeman, 2006; Hoffman, 1981; Mazzella & Feingold, 1994; Osborne & Rappaport, 1985; Stawiski, Dykema-Engblade, & Tindale, 2012; Willis-Esqueda, Espinoza, & Culhane, 2008).

이러한 여러 법률외적 요인들 중에서, 본 연구는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을 중심으로 이 요인과 상호작용할 것으로 추론되는 범죄유형 요인 및 판단자가 가지는 공정한 세상에 대한 인식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판단함에 있어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유형 간의 고정관념적 관련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판단자들의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이들 변인들이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의 전형성

범죄의 고정관념과 관련된 처벌판단 연구들은 특정 범죄와 고정관념적으로 연관된 특성을 가졌다고 지각되는 범죄자가 더 유죄선고나 장기간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더 범죄의 책임이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소수 인종(흑인, 중남미계등)이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변인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전형적인 범죄자로 지각되고, 이러한 고정관념이 활성화 된 범죄자는 그렇지 않은 범죄자보다 더 가혹한 처벌판단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예, 박희찬, 김혜숙, 2010; Bodenhausen & Wyer, 1985; Espinoza & Willis-Esqueda, 2008; Freeman, 2006; Gleason & Harris, 1976; Gordon, 1990; Gordon, Bindrim,

McNicholas, & Walden, 1987; Gordon, Michels, & Nelson, 1996; Hoffman, 1981; Mazzella & Feingold, 1994; Osborne & Rappaport, 1985; Willis-Esqueda, Espinoza, & Culhane, 2008).

그러나 범죄의 전형성 영향을 시사한 연구들은 소수 집단(소수 인종, 낮은 사회경제적지위를 가진 자 등)에 게 전형적일 것으로 추론되는 살인, 강도, 절도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특정 범죄에 대한 특정 범죄자의 고정관념적 역할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증명한 연구는 Gordon(1990), Willis-Esqueda 등(2008), 그리고 최승혁과 허태균(2011)의 연 구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Gordon(1990)의 연구에서 는 사전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가장 블루칼라 범죄(침 입절도) 또는 화이트칼라 범죄(횡령)라고 지각한 범죄 들을 선정해 제시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흑인 또 는 백인 범죄자에게 사람들이 어떤 처벌판단을 내리는 지 탐색했다. 연구 결과, 범죄자의 인종과 범죄 유형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흑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가 절도를 했든 횡령을 했든 형량판단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백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가 횡령 을 저질렀을 때, 절도를 저질렀을 때 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결정했다. 또한, 범죄전형성(typical crime) 정 도를 측정한 결과, 인종의 주효과와 인종 및 범죄유형 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범죄유형 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백인이 흑인보다 더 범죄전형 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범죄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절 도 범죄에 대해서는 흑인과 백인의 범죄전형성 정도에 차이가 없었지만, 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흑인보다 백 인에게 더 전형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즉, Gordon(1990)의 연구 결과는 백인에게 전형적인 횡령 범죄 상황과 흑인이나 백인 모두에게 전형성이 유사한 절도 범죄 상황을 제시했고, 따라서 절도 범죄에서는 인종 간 처벌크기가 다르지 않았지만, 횡령을 그 범죄 에 전형적인 백인이 저질렀을 때는 흑인보다 더 가혹 한 형량을 부과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범죄전형성의 영향 측면에서 Gordon(1990)의 절도 범죄의 결과와 유 사하게, 최승혁과 허태균(2011)은 범죄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든지 또는 그 지위가 낮은 사 람들에게든지 어느 쪽에도 전형적이지 않도록 범죄의

전형성을 통제(판단 대상 범죄를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해치사로 조작)하여, 순수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범죄의 전형성을 통제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형량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Willis-Esqueda 등(2008, 연구 1)의 연구에서는 사전 연구를 통해 소수 인종이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범죄자에게 전형적인 범죄(low status crime)라고 지각되는 자동차 절도와 백인이나 높은 사회경제적 지 위를 가진 범죄자에게 전형적인 범죄(high status crime)라고 지각되는 횡령을 선정해 제시하고, 범죄자 의 인종(맥시코계 미국인 대 유럽계 미국인)과 높은 또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어떻게 상호작용하 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했다. 유럽계 미국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1의 결과, 유・무 죄 선고와 형량 및 비난 판단에서 인종과 사회경제적 지위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범죄유형에 상 관없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맥시코계 미국인에게 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맥시코계 미국인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또는 낮은 유럽계 미국인에 비해 유죄를 더 선고했다. 형량 및 비난 판단에서도 사회경 제적지위가 낮은 맥시코계 미국인에게 여타의 조건들 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무거운 형량판단을 내렸고 더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범죄의 전형 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하거나 조작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범죄의 전형성 측면에서 해석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처벌판단 대상 범죄에 따른 범죄자 인종의 고정관념적 역할은 비교적 분명한 데 반해,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고정관념적 역할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종 변인이 혼합되거나 전형성이 직접적으로 조작 또는 비교되지 않아서 (Willis-Esqueda et al., 2008), 또는 전형성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높거나 낮게 조작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못해서(최승혁, 허태균, 2011), 명확히 검증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벌판단에 대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내재한 범죄의 전형성의 역할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또는 낮은 범죄자에게 전형적이거나 전형적이지

않은 범죄유형 및 상황을 조작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즉, 판단자들은 사회경제 적 지위에 전형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판단을, 전형적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 공정한 세상에 대한 인식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공정하다고 믿는지와 범죄 자에 대한 처벌판단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은, 현재 세상을 공정하다고 믿는, 이른 바 공정세상 믿음이 강 한 사람들이 세상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범죄자들에 대 해 강한 처벌판단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회복하고 세상 에 대한 통제감을 찾으려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 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소수에 지나 지 않고 그 결과도 일관되지 않는다(최승혁, 허태균, 2011; Freeman, 2006; Gerbasi & Zuckerman, 1975; Izzett, 1974; Osborne & Rappaport, 1985). 즉, Izzett(1974: Rubin & Peplau, 1975에서 재인용)과 Gerbasi와 Zuckerman(1975: Rubin & Peplau, 1975에 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만 형량판단에 대한 공정세상 믿음의 직접적인 영향이 확인되었고, 반면, Osborne과 Rappaport(1985)는 공정세상 믿음이 범죄자에 대한 형 량의 크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함을 증거하고 있다. Freeman(2006)의 연구에서는 형량의 크기에는 공정세상 믿음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유죄성(degree of guilt)과 범죄의 책임(responsibility for the crime) 에 대해서만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정세상 믿 음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즉, 공정세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범죄자의 유죄성 및 범죄의 책임 판단이 다르지 않았지만, 공정세상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사 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보다 낮은 범죄자에게 더 유죄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더 범죄에 대한 책임이 크 다고 판단했다.

최승혁과 허태균(2011)의 연구에서는 공정세상 믿음이 공정세상 기대와 상호작용하여 형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세상이 지금보다 더 공정해져야 된다는 당위적 기대가

큰 사람들이 그 기대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범죄자에 게 더 긴 형량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혀 재 사회에 대한 공정성 믿음이 강한 사람들, 즉 공정 세상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범죄자에게 부과한 형량의 크기가 공정세상 기대의 크기에 상관없이 유사했지만, 공정세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세 상이 공정해져야 된다고 강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그 기대가 약한 사람들보다 범죄자에게 더 긴 형량을 부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의 연구는 형벌의 응보 적 • 억제적 목적(법원행정처. 1999)에 더 부합하는 공 정세상 기대가 공정세상 믿음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 한, 현재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세상을 더 정의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큰 사람들, 즉 공정한 세상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들이 그 기대가 작은 사람들보다 범죄자에게 더 강한 처벌판단을 내림으로써 세상에 대한 통제감을 회 복하려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중, 처벌판단에 대한 공정세상 믿음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약하고 일관적이지 않으며, 공정세상 기대의 영향력이 더 크고, 이러한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기대, 그리고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서로 상호 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더욱 명확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공정세상 기대의 주효과와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복검증하고, 이 변인들과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설계 및 참가자

본 연구는 2(범죄유형: 업무상횡령 대 인질강도) X 2(범죄자의 사회경제적지위: 저 대 고) X 2(공정세상민음: 저 대 고) X 2(공정세상기대: 저 대 고) 피험자 간설계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수도권의 K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322명(남 141명, 여

181명)이었고, 연령은 17세에서 38세까지로 평균(SD) 20.9(2.35)세였다. 참가자들은 범죄 시나리오 상 '업무상 횡령' 조건(사회경제적지위 저 조건 80명, 고 조건 80명, 또는 '인질 강도' 조건(사회경제적지위 저 조건 79명, 고 조건 83명)에 무선 할당되었다.

#### 범죄 시나리오

각 시나리오의 범죄유형은 서로 비교 가능하도록 범 죄의 목적이 유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이 유사한 범죄 들을 선정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들이 주로 저지르고 또한 그들에게 전형적일 것 이라고 추론되는 범죄유형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액의 공금을 횡령하는 업무상횡령 범죄이다. 이러한 업무상횡령 범죄와 유사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범죄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범죄의 중대성을 띄면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범죄자들이 주로 저지를 것으로 추론되는 범죄유형은 강도 범죄이다(경제개혁 연대. 2007; 대검찰청. 2010; 박희찬. 김혜숙. 2010; 최 승혁 등, 2009 참고). 그러나 일반적인 강도 범죄는 피 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행태 면에서 일반적인 횡령 범죄와 다르고 실재적인 피해액 도 소액에 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에 대 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고액을 취하는 형 태의 인질강도 범죄를 선정했다. 각 범죄 시나리오는 법정형1) 및 양형기준2)에 근거해 범죄분석(대검찰청, 2010) 및 관련 사건 기사와 판결문을 바탕으로 약 4년 의 징역형에 해당하도록 범죄 상황을 조작하여 작성하 였다. 각 범죄시나리오에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는 직위, 소득, 교육 수준을 변화하여 높게 또는 낮게 조작하였다.3) 다음에 제시된 시나리오는 사회경제적

<sup>1) &#</sup>x27;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 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에 근거하고, '인질강도'는 형 법 제336조에 근거함.

http://sc.scourt.go.kr/sc/criterion/criterion\_01/index\_10. html

<sup>3)</sup> 본 연구의 목적이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른 범죄전형성의 역할을 명확히 검증하고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영향력을 반복검증 하는 데 있기 때문 에, 범죄전형성을 조작한 본 연구결과들 간의 비교는 물론 범죄전형성을 통제했던 최승혁과 허태균(2011)의

지위가 높은 조건의 시나리오로, 시나리오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이 지위를 조작한 부분이고, 밑줄 친 부분 중 대괄호 안의 부분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조작한 부분이다. 이 외 시나리오의 구성은 각 범죄별로 동일했다. 각 범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업무상횡령

중견기업 \*\*의 전문경영인(CEO) [회계 부서 직원] 인 김00(40대 초반, 남성)씨는 회사자금 약 102억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00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회계 관련 장부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약 102억원을 빼돌렸으며, 이렇게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횡령액중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부분은 약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00씨는 이 외의 다른 범죄 전과가없는 초범이었다. 김00씨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전문 인력으로, 1년에 약 2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김00씨는 상업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1년에 약 2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 인질강도

중건기업 \*\*의 전문경영인(CEO) [회계 부서 직원] 인 김00세(40대 초반, 남성)는 인질강도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00세는 여성을 납치해 거액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납치대상을 물색 하던 중, 2010년 2월 17일 저녁 11시경 서울 00구 00동에서 귀가하던 A씨(21세, 여성)를 위험하여, 자신의 차량으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비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범죄의 중대성 및 범죄자의 특징과 같은 가외변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승혁과 허태균(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각 범죄의 중대성을 약 4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도록 설정하였고, 각 범죄자가 초범임을 상정하였으며, 또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범죄자의 직종 및 직위, 소득, 교육 수준의 변화 양상을 이들 연구에서의 변화 양상과 같이 조작하였다.

로 납치하였다. 김00씨는 A씨의 부모에게 몸값으로 2 억원을 뜯어냈고, A씨는 별다른 상처 없이 무사히 풀려났다. 범행 1주일 후 김00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김00씨는 이 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김00씨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전문 인력으로, 1년에 약 2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김00씨는 상업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1년에 약 2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 측정

#### 공정세상 믿음 및 공정세상 기대

'공정세상 믿음' 척도는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공 정하다고 지각하며 믿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Rubin 과 Peplau(1975)가 개발한 Just world scale을 최승혁 과 허태균(201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공정세상 기대' 척도는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공정해 져야 된다고 바라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최승혁과 허태균(201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했다. 공정세상 믿 음 및 공정세상 기대 척도는 각각 20문항으로 6점 척 도(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6: 매우 동의한다)로 구 성되었다. 공정세상 믿음 척도는 '기본적으로 세상은 공평한 곳이다', '한국 법정에서 죄 있는 사람이 풀려나 는 것은 흔한 일이다(역채점 문항)' 등의 문항으로 구 성되었고, 공정세상 기대 척도는 '반드시 세상은 공평 한 곳이어야 한다', '한국 법정에서 죄 있는 사람이 풀 려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공정세상 믿음 척도 .68. 공정세상 기대 척도 .88이었다. 공정세상 믿음 및 공정세상 기대 측정치는 집단 간 분석을 위해, 각 측정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저 또는 고 집단으로 분류했다(Freeman, 2006 참고).

#### 종속변인

범죄 시나리오를 읽은 후, 참가자들은 9점 척도 상에서, 범죄자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지(1: 거의 비난받을 만하지 않다 - 9: 매우비난받을 만하다), 범죄자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원인이 주로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지(1: 범죄자의 성향 및 기질적 원인 - 9: 범죄자가 처한 상황적원인),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피해의 크기나 피해의 범위 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1: 매우 낮다 - 9: 매우 높다), 범죄자가 차후에(이와 유사하거나 또다른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1: 매우 낮다 - 9: 매우 높다)에 응답하였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법관이라면, 위와 같은 범죄자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징역형)을 내리시겠습니까?(최저 1개월부터 최고 30년까지의범위 내에서 적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은 년 단위로 반올림하여 코딩하였다.

#### 절차 및 자료분석

참가자들은 먼저 성별과 연령에 응답했고, 공정세상 민음 척도에 응답했다. 이 후 업무상횡령 또는 인질강도 범죄에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또는 낮게 조작한 시나리오를 읽고, 조작점검 문항 및 종속변인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공정세상기대 척도에 응답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먼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의 전형성에 대한 조작점검을 위해 각 범죄유형별로 일원 변량분석 되었고,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 척도들의 신뢰도가 분석되었다. 그리고 도덕적 비난, 범죄 원인 귀인, 피해의 심각성, 재범 가능성, 그리고 형량판단에 대한 범죄유형, 범죄자의 사회경제적지위,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종속변인별로 사원 변량분석되었다.

#### 결 과

#### 조작 점검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작은 '당신은 위와 같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 9: 매우 높다)라고 물어 점검하였고.

범죄 전형성의 조작은 '당신은 위와 같은 범죄자들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전형적이라고 (얼마나 그들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전형적이지 않다 - 9; 매우 전형적이다)라고 물어 점검하였다.

각 범죄유형별로 조작 집단 간 일원 변량분석을 실 시한 결과,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의 전형성 조작은 모두 성공적이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 은 범죄자에게 전형적으로 시나리오를 조작한 업무상 횡령 범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설정한 집단 (M=6.97, SD=1.30)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설정한 집단(M=4.26, SD=1.55)보다 그 지위를 더 높게 지각했 고, F(1, 158)=143.77, p<.001, n<sub>p</sub><sup>2</sup>=.48, 그 범죄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M=5.16, SD=1.72) 보다 높은 사회경 제적 지위(M=6.06, SD=1.66)에 더 전형적이라고 지각 했다, F(1, 158)=11.34, p=.001, n<sub>p</sub><sup>2</sup>=.07. 또한, 사회경제 적 지위가 낮은 범죄자에게 전형적으로 시나리오를 조 작한 인질강도 범죄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설 정한 집단(M=7.16. SD=1.01)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 게 설정한 집단(M=3.92, SD=1.35)보다 그 지위는 더 높 게 지각했고, F(1, 160)=301.42, p<.001,  $\eta_p^2=.65$ , 그 범 죄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M=3.77, SD=1.78) 보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M=4.63, SD=1.55)에 더 전형적이라고 지각했다, F(1, 160)=10.71, p=.001, n<sub>D</sub><sup>2</sup>=.06.

#### 범죄자에 대한 형량 판단

먼저, 형량 판단에 대한 범죄유형,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원 변량분석을 실시했다(표 1참고). 분석 결과, 예상한 것과 같이 형량판단에 대한 공정세상기대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1, 306)=6.26, p=.013,  $n_{\rm th}^2=.02$ . 즉, 앞으로 세상이 공정해져야 된다는 당위적 기대가 높은 사람들(M=8.88, SD=7.48)이 그 기대가 낮은 사람들(M=7.29, SD=6.36)보다 범죄자에게 더긴 형량을 부과했다. 그리고 공정세상믿음 및 공정세상기대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F(1, 306)=4.67, p=.031,  $n_{\rm th}^2=.02$ (그림 1참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정세상믿음이

_ 1 1110	·, — ·				.,	, ,, _		- ' ''		- 0 '			(02)				
범 죄 유 형		업무상 횡령								인 질 강 도							
사회경제지위	저				고				저				卫				
공정세상믿음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공정세상기대	저	고	저	卫	저	卫	저	고	저	卫	저	卫	저	卫	저	卫	
참 가 자 (n)	26	15	20	19	16	23	23	18	14	24	19	22	24	19	19	21	
도덕적 비난 <sup>a</sup>	7.42	7.67	6.50	7.79	6.87	8.00	7.57	8.28	7.64	7.54	7.63	7.91	8.13	8.42	8.05	8.38	
	(1.21)	(1.54)	(1.57)	(1.03)	(1.54)	(1.28)	(1.47)	(1.02)	(1.28)	(1.25)	(1.46)	(.97)	(.90)	(.84)	(.85)	(.74)	
범죄원인귀인 <sup>b</sup>	5.81	6.20	5.80	5.84	4.56	3.96	4.87	4.28	5.57	5.96	5.47	6.09	3.83	3.26	3.95	4.43	
	(2.50)	(2.21)	(2.33)	(2.17)	(2.10)	(2.84)	(2.79)	(2.59)	(1.87)	(2.18)	(2.29)	(2.02)	(2.33)	(2.56)	(2.37)	(3.12)	
피해 심각성 <sup>c</sup>	7.38	7.47	6.80	7.42	6.94	7.57	6.83	7.50	7.50	7.67	7.42	7.77	7.42	7.95	7.37	8.05	
	(1.13)	(.99)	(1.44)	(1.31)	(1.61)	(1.12)	(1.61)	(.92)	(1.56)	(.92)	(1.31)	(1.02)	(1.38)	(1.08)	(1.26)	(1.16)	
재범 가능성 <sup>d</sup>	6.96	6.87	5.85	6.53	7.12	7.83	6.96	7.50	6.43	6.96	6.42	6.45	6.63	7.79	6.63	6.86	
	(1.37)	(1.06)	(1.63)	(1.84)	(1.54)	(.94)	(1.77)	(1.10)	(1.34)	(1.30)	(1.26)	(1.37)	(2.16)	(1.03)	(1.17)	(1.74)	
형 량 (년) <sup>e</sup>	8.15	12.80	7.35	5.47	5.06	10.30	9.30	10.11	6.07	6.67	8.89	6.68	6.71	10.63	5.47	9.81	
	(6.98)	(11.13)	(6.03)	(3.53)	(4.12)	(7.70)	(4.96)	(8.55)	(6.11)	(4.73)	(9.21)	(7.05)	(6.52)	(7.08)	(4.94)	(7.63)	

표 1. 범죄유형,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에 따른 종속측정치 평균(SD)

주: a. 값이 클수록 비난 정도가 큼(9점 척도): 범죄유형 주효과(횡령<강도); 사회경제지위 주효과(저<고); 공정세상기대 주효과(저<고); 범죄유형 X 공정세상기대 이원상호작용효과; 범죄유형 X 사회경제지위 X 공정세상민음 삼원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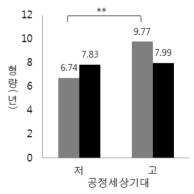
- b. 값이 작을수록 성향귀인, 클수록 상황귀인(9점 척도): 사회경제지위 주효과(저>고)
- c. 값이 클수록 피해의 심각성이 큼(9점 척도): 범죄유형 주효과(횡령<강도); 공정세상기대 주효과(저<고)
- d. 값이 클수록 재범가능성이 큼(9점 척도): 사회경제지위 주효과(저<고); 공정세상민음 주효과(저>고); 공정세상기대 주효과(저<고)
- e. 값이 클수록 형량의 크기가 큼(0~30년): 공정세상기대 주효과(저<고); 사회경제지위 X 공정세상기대 이원상호작용효과; 공정세상믿음 X 공정세상기대 이원상호작용효과; 범죄유형 X 사회경제지위 X 공정세상믿음 삼원상호작용효과

큰 사람들은 공정세상기대가 크든지(M=7.99, SD=7.10), 작든지(M=7.83, SD=6.50) 형량 판단에 차이가 없었지만, F(1, 159)=.02, p=.881,  $n_{\nu}^2$ <-01, 현재 세상에 대한 공정성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세상이 공정해져야 한다는 당위적 기대가 큰 사람들(M=9.77, SD=7.78)이 그 기대가 작은 사람들(M=6.74, SD=6.20)보다 범죄자에게 더 긴 형량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59)=7.44, p=.007,  $n_{\nu}^2$ =.05.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최승혁, 허태균, 2011)와도 일관된 것이다.

또한, 형량판단에 대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정세상기대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F(1, 306)=4.54, p=.034,  $n_o^2$ =.02(그림 2 참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범죄자에게는 공정세상기대가 크든지 (M=7.54, SD=7.16), 작든지(M=7.76, SD=7.15) 형량의 크기가 유사했다, F(1, 157)=.04, p=.845,  $n_o^2$ <.01.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에게는 세상이 공정해져야 한다는 당위적 기대가 큰 사람들(M=10.21, SD=7.60)이 그 기대가 작은 사람들(M=6.83, SD=5.49)

보다 더 장기간의 형을 부과했다, F(1, 161)=10.62, p=.001,  $\eta_0^2$ =.06. 또한, 공정세상기대가 크면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조건(M=10.21, SD=7.60)은 공 정세상기대가 크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조건 (M=7.54, SD=7.16) 보다 더 긴 형량을, F(1, 159)=5.27,

#### ■공정세상믿음저 ■공정세상믿음고



주. \*\*p < .01.

그림 1. 형량판단에 대한 공정세상믿음 및 기대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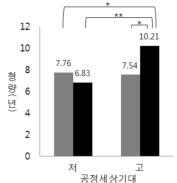
p=.023,  $\eta_p^2$ =.03, 공정세상기대가 낮으면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조건(*M*=7.76, *SD*=7.15) 보다 더긴 형량을 부과했다. *F*(1, 158)=4.41, *p*=.037,  $\eta_p^2$ =.03.

마지막으로 형량판단에 대한 범죄유형과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공정세상믿음의 삼원상호작용 효 과가 유의미했다, F(1, 306)=7.64, p=.006, n<sub>p</sub><sup>2</sup>=.02(그림 3 참고).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형량 판단에 미치는 영 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범죄유형별로 단순 상 호작용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질강도 범죄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정세상믿음 간의 상호작용 효과 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F(1, 154)=1.29, p=.258, n<sub>p</sub><sup>2</sup>=.01, 업무상횡령 범죄에서만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정세상 믿음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1,152)=7.58, p=.007, n<sub>D</sub><sup>2</sup>=.05.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정세상믿음 이 낮은 사람들은 횡령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든(M=8.15, SD=6.92) 낮든(M=9.85, SD=8.88) 형량판 단에 차이가 없었지만, F(1, 78)=.91, p=.344, n<sub>p</sub><sup>2</sup>=.01, 공정세상믿음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 은 사람이 횡령을 저질렀을 때(M=6.44, SD=5.00) 보다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횡령을 저질렀을 때(M=9.66,SD=6.69) 더 긴 형량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78)=5.91, p=.017, n<sub>p</sub><sup>2</sup>=.07.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 은 횡령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정세상믿음이 큰 사람들 (M=6.44, SD=5.00)이 그 믿음이 작은 사람들(M=9.85, SD=8.88)보다 더 짧은 기간의 형량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78)=4.43, p=.038, n<sub>p</sub><sup>2</sup>=.05.

### 범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 범죄원인귀인, 피해의 심각성, 재범가능성 판단

형량 판단에 대한 분석에 이어, 범죄유형,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공정세상믿음 및 공정세상기대가 범 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 범죄 원인에 대한 귀인, 범 죄 피해의 심각성,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해 각 종속변인 별로 사 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표 1 참고). 먼저, 범죄자에 대 한 도덕적 비난 판단에 대한 분석 결과, 범죄유형, 범 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공정세상기대의 주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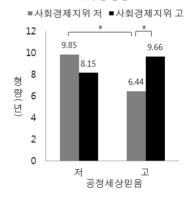
#### ■사회경제지위 저 ■사회경제지위 고



주.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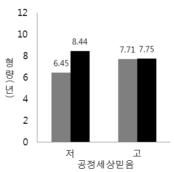
그림 2. 형량판단에 대한 사회경제지위 및 공 정세상기대의 상호작용효과

#### 업무상횡령



#### 인질 강도

■사회경제지위 저 ■사회경제지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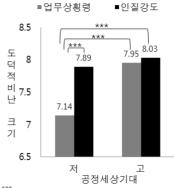
주. \*p<.05.

그림 3. 형량판단에 대한 범죄유형, 사회경제지위 및 공정세상믿음의 삼원상호작용효과

과가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업무상횡령 범죄(M=7.52, SD=1.41)보다는 인질강도 범죄(M=7.97, SD=1.08)를 저지른 범죄자를 더 도덕적으로 비난했고, F(1, 306)= 10.97, p=.001,  $n_{\rm p}^2$ =.04,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M=7.98, SD=1.18)를 그 지위가 낮은 범죄자(M=7.50, SD=1.33)보다 더 비난했으며, F(1, 306)=10.89, p=.001,  $n_{\rm p}^2$ =.03, 앞으로의 세상이 공정해져야 한다는 당위적기대가 높은 사람들(M=7.99, SD=1.12)이 그 기대가 낮은 사람들(M=7.50, SD=1.37)보다 범죄자를 더 비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306)=14.67, p<.001,  $n_{\rm p}^2$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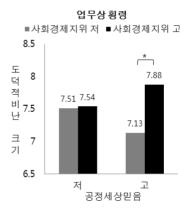
또한, 범죄유형과 공정세상기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F(1, 306)=5.57, p=.019, n<sub>p</sub><sup>2</sup>=.02(그림 4 참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질강도 범죄자에게는 공정세상기대가 크든지(M=8.03, SD=1.03) 작든지(M=7.89, SD=1.13) 비 난 정도가 유사했지만, F(1, 160)=.68, p=.410, n<sub>p</sub><sup>2</sup><.01, 업무상횡령 범죄자에게는 공정세상기대가 큰 사람들 (M=7.95, SD=1.22)이 그 기대가 작은 사람들(M=7.14, SD=1.47)보다 더 비난을 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58)=13.98, p<.001, n<sub>D</sub><sup>2</sup>=.08. 또한, 공정세상기대가 작은 사람들은 강도범죄자를 횡령범죄자보다 더 비난 했고, F(1, 159)=13.06, p<.001, n<sub>p</sub><sup>2</sup>=.08, 공정세상기대가 큰 사람들이 강도범죄자를 비난하는 정도는 공정세상 기대가 작은 사람들이 횡령범죄자를 비난하는 정도보 다 유의미하게 더 컸다, F(1, 169)=21.12, p<.001,  $\eta_{\rm p}^2 =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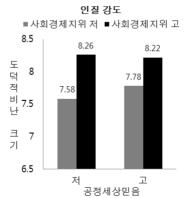
그리고 비난 판단에 대한 범죄유형과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공정세상믿음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나타났다, F(1, 306)=4.22, p=.041,  $n_p$ <sup>2</sup>=.01(그림 5 참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별로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횡령범죄에 대해서만 사회경제적 지위와공정세상믿음의 상호작용효과가나타났다, 업무상횡령: F(1, 152)=4.22, p=.042,  $n_p$ <sup>2</sup>=.03; 인질강도: F(1, 154)=.49, p=.486,  $n_p$ <sup>2</sup><.01. 횡령범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확인하기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정세상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횡령을 저지른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든지(M=7.54, SD=1.48) 낮든지(M=7.51, SD=1.33) 그 범죄자에 대한 비난 정도에 차이가 없었지만, F(1, 78)=.01, p=.934,  $n_p$ <sup>2</sup><.01, 공정세상



주. \*\*\*p<.001.

그림 4. 도덕적 비난에 대한 범죄유형 및 공정 세상기대의 상호작용효과





주. \*p<.05.

그림 5. 도덕적 비난에 대한 범죄유형, 사회경제지위 및 공정세상믿음의 삼원상호작용효과

믿음이 큰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횡령범죄자(M=7.88, SD=1.33)를 그 지위가 낮은 횡령범죄자(M=7.13, SD=1.47)보다 더 비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78)=5.74, p=.019,  $\eta_{D}^{2}$ =.07.

다음으로, 범죄의 원인이 범죄자의 성향 및 기질 때 문인지 또는 상황적 원인 때문인지에 대한 범죄유형. 사회경제적 지위, 공정세상믿음 및 기대의 효과를 사 원변량분석했다. 분석 결과,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의 주효과만이 나타났다, F(1, 306)=38.16, p<.001,  $n_{\rm b}^2$ =.11. 즉, 사람들은 범죄유형이나 공정세상 인식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 렀을 때(M=4.14, SD=2.61), 그 지위가 낮은 사람이 범 죄를 저질렀을 때(M=5.85, SD=2.19)보다 더 범죄의 원 인이 범죄자의 성향적 원인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로 인한 피해의 크기나 범위 등 피해의 심각성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사원변량 분석한 결과, 사람들은 인질강도 범죄(M=7.65, SD=1.20)가 업무상횡령 범죄(M=7.24, SD=1.30)보다 더 피해가 심각한 범죄라고 지각했고, F(1, 306)=8.21, p=.004,  $n_{\rm p}^2=.03$ , 공정세상기대가 높은 사람들(M=7.68. SD=1.07)이 그 기대가 낮은 사람들(M=7.20, SD=1.40) 보다 더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그 범죄의 피해가 심각 하다고 판단했다, F(1, 306)=10.91, p=.001, n<sub>p</sub><sup>2</sup>=.03.

마지막으로,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에 대한 범죄유형,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공정세상믿음, 공정세상기대 의 영향력을 사원변량분석한 결과,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정세상믿음 및 공정세상기대의 주효과가 나타 났다. 즉,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M=7.15, SD=1.55), 그 지위 가 낮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M=6.58, SD=1.43) 보다 또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각했다, F(1, 306)=13.28, p<.001, n<sub>b</sub><sup>2</sup>=.04. 또한 공정세 상믿음이 낮은 사람들(M=7.09, SD=1.46)은 그 믿음이 큰 사람들(M=6.65, SD=1.55)보다 범죄자들의 재범가능 성을 높게 지각했고, F(1, 306)=6.48, p=.011, n<sub>D</sub><sup>2</sup>=.02, 반 대로 공정세상기대가 높은 사람들(M=7.10, SD=1.41)은 그 기대가 낮은 사람들(M=6.64, SD=1.60)보다 더 범죄 자의 재범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F(1,306)=8.08. p=.005.  $n_p^2$ =.03.

#### 논의

본 연구는 특정 범죄에 고정관념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유형 및 공정세상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명확한 비교와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범죄 목적을 가지면서, 높은 또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범죄자에게 전형적인 또는 전형적이지 않은 범죄유형으로, 업무상 횡령 및인질강도 범죄를 선정하여 범죄의 전형성을 조작하고이를 점검했으며, 각 범죄 시나리오는 법정형 및 양형기준 등에 의거하여 범죄의 중대성을 유사하게 통제했다. 본 연구 결과, 범죄유형 별 형량의 크기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했음을 지지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량판단에 대한 공정세상 믿음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예상한 것과 같이 공정세상 기대의 주효과가 반복 검증되었다. 즉 세상이 공정해져야 한 다고 강하게 바라는 사람들은 그 기대가 약한 사람들 보다 범죄자에게 더 긴 형량을 결정했다. 이는 범죄자 가 그가 저지른 범죄의 크기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 다는 응보적 처벌철학과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여 잠 재적 범죄자들이 그러한 처벌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 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억제적 처벌철학(법원행정처, 1997)에 더 부합하는 공정세상 기대가 공정세상 믿음 보다 처벌판단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공정세상 기대가 큰 사람들이 그 기대가 작은 사람들에 비해 범죄의 피해를 더 심각하 게 지각하고, 범죄자를 더 비난하며 범죄자의 재범가 능성을 더 높게 판단한 본 연구 결과에 의해 뒷받침 된다.

또한, 예상한 것처럼 형량판단에 대한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상호작용효과가 반복 검증되었다. 즉, 현재 세상에 대한 공정성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이 공정해져야 한다는 당위적 기대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형량판단에 차이가 없었지만, 공정세상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서는 공정세상 기대가 큰 사람이 그 기대

가 약한 사람보다 범죄자에게 더 가혹한 형량판단을 했다. 이는 현재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러한 세상에 반발하여 앞으로의 세상이 공정해져야 한다고 강하게 바라지는 않으며, 세상의 공정성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최승혁과 허태균(2011)의 연구에서와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 간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r=-.03, p=.538)가 지지한다.

둘째. 형량파단에 대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정세상 기대의 상호작용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범죄자에게는 공정세상 기대가 크 든지 작든지 형량의 강도가 유사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에게는 세상이 공정해져야 한다고 강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그 기대가 약한 사람들보다 범죄자에게 더 장기간의 형을 부과한 것이다. 앞서 기 술한 것처럼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동기가 큰 사람들은 범죄자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데, 특 히 사회를 공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사회 적으로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회경제적 지위 가 높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에 더욱 더 반발하여 더 강한 처벌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 를 그 지위가 낮은 범죄자보다 더 비난하고, 더 성향 귀인을 하며, 더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본 연구 결과가 뒷받침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 람들이 그들에게 전형적인 횡령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정세상 기대가 높은 판단자들이 그 기대가 낮은 사 람들보다 그 범죄자를 더 강하게 비난한 결과로도 지 지된다.

셋째, 형량판단에 대한 범죄유형과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공정세상 믿음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인질강도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정세상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업무상 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세상 믿음이 강한 판단자들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범죄자에게 그 지위가 낮은 범죄자에게 보다 더 강한 형량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결과들과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 특히 높은

지위를 가진 범죄자가 그들에게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자에게 강도 높은 처벌판단을 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횡령 범죄를 저지른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범죄자에 대해그 지위가 낮은 범죄자에게 보다 공정세상 믿음이 강한 판단자들이 더 강하게 비난한 결과가 뒷받침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Freeman(2006)의 결과와 속성적으로 유사한 패턴으로 보인다. 즉 Freeman(2006)의 연구에서 강도살인 범죄를 제시했을 때, 공정세상 믿음이강한 판단자들은 제시된 범죄를 전형적으로 저지를 것으로 추론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범죄자에게 그지위가 높은 범죄자에게 보다 더 유죄성이 높다고 보았고, 범죄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처벌판단에 대한 공정세상 기대의 효과와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상호작용효과를 반복 검증하여 그 의미를 더욱 더 공고히 했고, 범죄의 전 형성을 조작하여 한국사람들이 느끼는 처벌판단에 대 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공정세상 인 식과 더불어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 국인들은 특정 범죄유형과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 조합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이러한 범죄의 전 형성이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침을 부분적으로 지지하 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사회경제적 지 위가 낮은 범죄자에게 보다 그 지위가 높은 범죄자에 게 더 엄밀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특히 높 은 지위의 범죄자가 전형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욱 더 강한 처벌판단을 내 림을 시사한다. 이는 일부, 문성우(2007)가 논한 것처 럼 한국 사람들에게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 예우' 논란 등 사법불신의 풍조 때문에 일어난 사회지 도층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최승혁 등(2009)의 연구에서 화이트칼라 범 죄에 대해 블루칼라 범죄보다 그 법정형이 유사한대도 강한 처벌판단을 내렸다는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본 연구결과와 일부분 그 의미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비슷한 범죄엔 비슷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법의 형평성 원리에 따라 양형 결정에는 법률적 요인 만이 영향을 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판단자의 공 정세상 인식과 같은 법률외적 요인이 실제로 형량 판 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정한 배심원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점을 지닌다.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범죄자에 게 전형적인 인질강도 범죄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지위 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를 설명할 명확한 증 거가 제시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업무상횡령과 인질강도의 범죄의 중대성 및 범죄의 목적을 유사하게 통제했지만, 판단자들이 업무상횡령 범죄자에게보다 인질강도 범죄자에게 더 강한 비난을 하고 더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한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추정했을 때, 횡령범죄보다 더 비난받고 더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각 되는 인질강도 범죄를, 앞서 논한 것처럼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할 사회지도층들이 저질렀을 때, 더 강 한 반감을 낳고 따라서 더욱 더 강한 처벌판단을 함으 로써 범죄전형성의 영향력이 상쇄된 것일 수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제를 파악할 수 있는 변인 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장의 배심 원들이 재판에서 수행하는 절차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 고, 실제 배심원들이 고려하는 범죄의 증거 및 참고인 증언, 그리고 검사 및 변호사의 변론 등 수많은 변인 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검증한 변인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배심원제도나 사법체계에 더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경제개혁연대 (2007). 우리나라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율을 중심으로 (경제개혁리포트, 2007-8). 서울: 경제개혁연대.

고재홍 (1995). 처벌 판단에 관여하는 정보들의 통합방식 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김범준, 최승혁 (2008). 처벌 기준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효과: 남녀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43-361.

대검찰청 (2010).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문성우 (2007, 5, 25). 비슷한 범죄엔 비슷한 처벌... '법 앞의 평등' 구현. 국정브리핑.

박희찬, 김혜숙 (2010).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처벌 관련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4(2), 27-49.

법원행정처 (1999). 양형실무, 서울: 법원행정처.

최승혁, 김범준, 김시업 (2009).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 성격, 23(3), 1-17.

최승혁, 허태균 (2011). 공정한 사회를 위한 형사처벌: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 지: 사회및성격, 25(2), 113-125.

최훈석, 박은영 (2008). 응보, 일반인 제지, 및 무력화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 회및성격, 22(4), 175-195.

Bodenhausen, G. V. & Wyer, R. S. (1985). Effects of stereotypes on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 process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2), 267–282.

Espinoza, R. K. & Willis-Esqueda, C. (2008).

Defendant and defense attorney characteristics and their effects on juror decision making and prejudice against Mexican America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4), 364-371.

Freeman, N. J. (2006). Socioeconomic status and belief in a just world: Sentencing of criminal defenda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10), 2379–2394.

Gerbasi, K. C., & Zuckerman, M. (1975, April).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jury biasing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unpublished).

Gleason, J. M. & Harris, V. A. (1976). Group discussion and defendant's socio-economic status as determinants of judgments by simulated

- juro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6(2), 186–191.
- Gordon, R. A. (1990). Attributions for blue-collar and white-collar crime: The effects of subject and defendant race on simulated juror decis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0(12), 971–983.
- Gordon, R. A., Bindrim, T. A., McNicholas, M. L., & Walden, T. L. (1987). Perceptions of blue-collar and white-collar crime: The effect of defendant race on simulated juror decisio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8(2), 191–197.
- Gordon, R. A., Michels, J. L., & Nelson, C. L. (1996).
  Majority group perceptions of criminal behavior:
  The accuracy of race-related crime stereotyp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2), 148–159.
- Hoffman, E. (1981). Social class correlates or perceived offender typicality. *Psychological Reports*, 49, 347–350.
- Izzett, R. (1974). Personal communication, (unpublished).
- Mazzella, R., & Feingold, A. (1994).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of defendants and victims on judgments of mock jur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5), 1315–1344.
- Osborne, Y. H., & Rappaport, N. B. (1985). Sentencing severity with mock jurors: Predictive validity of three categorie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3,* 467-473.
- Rubin, Z., & Peplau, L. A. (1975). Who believes in a just world? *Journal of Social Issues*, 31(3), 65–89.
- Stawiski, S., Dykema-Engblade, A., & Tindale, R. S. (2012). The roles of shared stereotypes and shared processing goals on mock jury decision mak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4, 88-97.

Willis-Esqueda, C. W., Espinoza, R. K. E., & Culhane, S. E. (2008). The effects of ethnicity, SES, and crime status on juror decision making: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Europ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mock juror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0(2), 181-199.

## High-rolling Criminals: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Punitive Judgment and its Psychological Mechanism

## Seung-Hyuk Choi Taekyun Hur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s to replicate the interaction of just world belief(JWB) and just world hope(JWH),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riminal's socioeconomic status(SES), type of crime, and the participants' recognition of just world on punitive judgment. 322 participants completed the JWB scale (Rubin & Peplau, 1975) and JWH scale (Choi & Hur, 2011) and made punishment decisions after reading one of the four crime scenarios that waried in the criminal's SES (high or low) and the type of crime (embezzlement or robbery by hostage). Embezzlement is a crime typical for criminals with high SES and Robbery by hostage is a crime typical for criminals with low SES. Blameworthiness, attribution, severity of damage, and likelihood of recidivism, which may explain one's punitive judgment, were also measured. First, people who believe that the world is just did not vary on punitive judgment regardless of their just world hope, but among those who do not believe that the world is just, people holding high (vs. low) just world hope gave harsher punishment. Second, regardless of the type of crime committed, participant's just world hope did not affect their punitive decision on criminals with low SES, but participants holding high (vs. low) hope for a just world imposed more severe punishment to criminals with high SES. Third, criminals with high SES were thought to be more blameworthy, more attributed by disposition, and more likely to recommit crime than criminals with low SES, regardless of the type of crime. These findings may suggest that there may be other psychological mechanisms in addition to the typicality of crime when determining the punitive judgment for criminals with high SES.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regard to perception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function of criminal punishment in Korea.

Keywords: socioeconomic status, crime typicality, just world belief, just world hope, punitive judgment

1차원고 접수일: 2012년 09월 14일 수정원고 접수일: 2012년 11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13일